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).

II. 검토의견

-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 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윤 상 열)